

의안번호	2217129
의뢰인	박홍배의원
회답일	2026.9.1.
추계번호	26D1187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	금융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규정함	
2	안 제22조(청년 금융생활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청년의 원활한 절차 진행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3항) - 회생절차등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-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 - 그 밖에 회생절차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금융생활, 채무관리,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의(청년 금융생활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 제3조제5호에 따라 금융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포함

-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금융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추가되는 경우,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수, 개인회생절차 지원 및 금융 교육 등 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소요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국무조정실은 가족돌봄·자립준비청년(약 10만명 추정)을 주요 취약계층 청년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및 자립 지원체계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 -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및 자립 지원체계 구축(보건복지부, 2026년 예산 516억 4,200만원)
 - 자립수당(월 50만원), 자립정착금, 의료비 지원 등 경제 부담 완화 지원
 -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, 공공임대주택 지원, 교육 제공 등 기반 마련 지원
 -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,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 제공, 자조모임 활동 지원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